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1단계]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과 [2단계] 예비유니콘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단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과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사업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목적

-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

□ 사업별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신청접수	평가선정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①,② 둘다 충족)	50개사 내외	1년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등	총 사업비의 50% 이상	3.6.~ 3.31.	4~5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Track 1 : 일반) 아래 요건 충족기업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기업 ②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③ 지역스타기업(①,②,③ 중1) (Track 2 : 글로벌) Track 1 지원 요건 충족기업 중 해외진출 추진기업	15개사 내외	-	최대 200억원 이내 보증	-	4.3 ~4.12	4~6월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16년 4월 1일 이후 창업기업)

* 창업여부 기준표[참고1] 참조

②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 (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 투자실적 인정범위[참고2] 내에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에 한함 (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20, 21, 22년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 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공고마감일('23.3.31.)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 공고마감일('23.3.31.)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공고마감일('23.3.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3.3.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 제외 업종 >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협약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협약종료 또는 협약종료예정일이 공고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협약종료일이 23년 6월 30일 이전인 기업)인 기업 지원 가능

** '포스트 팀스' 지원사업 기 수혜기업은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 만큼 차감 후 지원 (경우에 따라, 아기유니콘의 정부지원금 없이 체결할 수 있음)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지원내용

① **(시장개척자금)** 신시장 (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 (정부지원금) 지원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50% 이하 + 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 (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최대 6억원

**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금(50%)	선정기업 대응자금(50%)	
		현금	현물*
600백만원	300백만원	60백만원	240백만원
100%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4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시장개척 관련 업무(국내·외 마케팅, 영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 [참고3]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참조

② **(글로벌진출 지원)** 내수를 넘어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시장 진출, VC 연계 및 디지털 전환 대응 수단 제공

내용	주요 내용
① 글로벌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글로벌 인재들의 아기유니콘 취업을 연계해 유학생 모국으로 진출 확대 지원
② 글로벌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현지 대형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현지 유력 인플루언서 및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 해외 언어별 홍보영상 제작 지원, 외국어 소셜미디어 제작 지원 ■ 수출바우처 지원(가점부여)을 통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③ 글로벌 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민간자본과의 협업 강화, KSC 활용 등
④ 글로벌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에 강점이 있는 포털과 연계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대응

② **(신시장진출 지원)** 신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지원 및 선정 이후 성과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향상 지원

구분	지원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신시장진출 지원	① VC 및 투자자 미팅 지원	○ IR 매칭(국내+해외) 지원 등
	②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진출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등
	③ 규제 샌드박스 지원	○ 법률 자문 지원 등
① (VC 및 투자 IR) 창업기업과 투자자(펀드)와의 만남의 장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매칭을 통한 성공적 딜메이킹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② (해외 진출 지원) 아기유니콘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창진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외 지원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③ (규제 샌드박스 지원)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시장 진출 촉진		

③ **(금융·R&D·경영지원)** 아기유니콘의 스케일업(금융지원) 및 성장 변곡점 시기의 집중 성장을 위한 R&D 및 경영지원을 통한 기업성과 강화

구분	지원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금융지원	① 특별보증(기보, 최대 50억원)	○ 보증료 우대
	② 정책자금(중진공, 최대100억원)	○ 대출한도 우대
	③ 금융기관 연계 우대 지원	○ 금리 우대 등
R&D지원	④ 기술혁신개발 R&D(기정원, 최대20억)	○ 지원요건 우대(매출액 미적용)
	⑤ 지역특화 R&D 연계지원	○ 지원요건 우대(가점 부여)
	⑥ R&D기획 지원 프로그램	○ R&D 기획 컨설팅
경영지원	⑦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지원	○ 인건비 지원(신규채용 청년)
	⑧ 방송광고 지원 프로그램	○ 방송광고비(송출비 할인 등)
	⑨ ESG 경영 도입 지원	○ ESG 자가진단

※ 기술혁신개발 R&D, 지역특화 R&D 분야는 현재 개정이 추진중으로 기존 인센티브가 확대 되거나 혹은 축소될 수 있음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 ('23년 추가)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23.5월~'24.4월 예정)

3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평가가점** : 초격차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2, 3차 심사에서 각각 가점부여(+1)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10대 분야	세부 분류(예)
① 시스템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② 바이오·헬스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③ 미래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④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⑤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⑥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⑧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⑨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⑩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가점 대상을 창진원이 확인

□ **평가절차** :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평가단계		주관기관	평가내용
요건검토 및 기업가치 산정		창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및 기업가치 산정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 방문 등 기술·사업성 평가 ·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토론평가 · 최종 발표평가(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공동평가)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및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확정
1차	기술사업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2차	심층식 토론평가	창업진흥원	
3차	발표평가		
최종선정			

①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 (창업진흥원)

- * ① 투자실적, ② 업력, ③ 채무불이행 여부, ④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⑤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⑥ 업종, ⑦ 휴폐업 여부

- (기업가치 산정) 투자실적에 따른 기업가치를 산정 방식

* (기업가치 산정기준)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마지막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① **주식 투자의 경우**, 1주당 가격(투자액/인수 주식 수) x 총 발행 주식 수
- ② **전환사채 투자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한 가격 또는 투자심사 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경쟁률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제출서류 기준 기업가치를 통해 1차평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음

② **(1차 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기술·사업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2배수 내외)

- *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기술사업평가모형(KTRS-SM) 활용하여 ① 경영주 역량, ② 기술성, ③ 시장성, ④ 사업성을 계량평가

③ **(2차 평가)**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 (전문평가단) (1.5배수 내외)

< 심층 토론식 평가 기준(안) >

구분(배점)	평가항목	배점
글로벌 시장확장성 (30)	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10
	②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이 글로벌 시장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	10
	③ 주력시장 규모의 성장(확대)가능성	10
사업모델 혁신성 (30)	④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10
	⑤ 기술·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10
	⑥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확장 가능성	10
성장성 (40)	⑦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외향적(재무적) 성장 가능성	10
	⑧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10
	⑨ 국내·외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10
	⑩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역량	10

④ (3차 평가) 공개 발표평가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공동평가* 결과에 따라 아기유니콘 최종 선정

* 공동평가 지표(안) : ①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30점), ②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30점), ③경영진의 역량 및 BM의 파급력(30점), ④사회공헌 가능성(10점)으로 평가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평가 기간 중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에 현장방문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관련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 3월 31일(금), 15시까지

□ 신청방법

○ K-유니콘 프로젝트 (www.k-unicorn.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K-Unicorn' 사이트 접속 → ② 팝업 및 공지사항 확인 → ③ K-Startup 연결 →
- ④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⑤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 ⑥ '2023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클릭, 사업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⑦ 기본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5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여부												
1	사업계획서	별첨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전동의서 * 기술보증기금의 1차 평가를 위한 동의서														
4	주주명부														
5	투자유치내역확인서														
6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개인투자자는 '엔젤지원센터 전문개인투자자' 조회 대상자만 인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투자자 구분</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td> <td>사업자등록증</td> </tr> <tr> <td>투자조합</td> <td>고유번호증</td> </tr> <tr> <td>개인(엔젤투자자)</td> <td>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td> </tr> <tr> <td>창업기획자</td> <td>창업기획자 등록증</td> </tr> <tr> <td>외국투자회사</td> <td>Certification of Registration</td> </tr> </tbody> </table>	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별첨3 참고	필수
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별첨3 참고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9	최근 3년분('20,21,22년*) 재무제표 * '22년도 재무제표는 1차평가(기보 평가)시 제출 가능														
10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1	창업기업 확인서(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 발급까지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되므로 '미발급 기업'은 선 신청 필요하며, 입력정보 오기입 및 서류미비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내 미포함 ** 3차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이메일)안내 예정	cert.k-startup. go.kr	3차평가 대상자												
12	채무변제 관련 서류	-	해당시												

* 3차 평가 대상자는 PPT자료 별도 제출(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사업 신청기간 내 K-Startup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 마감 시간 이후 등록된 정보는 변경 불가

5

참고사항

□ 아기유니콘 기업 연계지원 혜택 (직접지원 보조금 최대 3억 외)

※ 연계지원은 해당 기관에서 심사시 우대하는 것으로 본 사업에서 직접지원하는 것은 아님

[1] (특별보증)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 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보증 지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액 산정 및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투자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최대 50억원

* 기술평가,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금액 결정(기거래중인 보증 포함)

- (보증비율, 보증료) 100% 전액보증, 1% 고정보증료

* 투자옵션 미부여시 95% 부분보증

[2] (정책자금 연계) 아기유니콘 성장 가속화를 위한 최대 대출한도 우대 등 대규모 정책자금 연계지원

○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우대 및 상담 우대

* (시설자금) 한도 최대 100억원, (일반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융자복합금융) 60억원 이내

[3] (금융사 연계 우대) 민간금융사인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연계하여 우대

○ 저금리 사업화자금 대출*(사업화자금, 기술금융대출 등), 외환서비스 지원(관세, 환리스크관리) 등 우대지원

* (금리우대) 1년간 최고 1% 범위 내 금리 감면

[4] (기술혁신개발 R&D 연계)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의 혁신성장 도모 및 소부장 분야 국산화 선도 기업군 육성

○ 아기유니콘 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기술혁신개발 R&D 지원요건*」중 매출액 기준 미적용 우대

* (지원요건)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 충족

[5] (지역특화 R&D 연계)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대상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 시 선정 평가에 가점 부여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지역특화산업육성+(R&D) 개요 >

- **(사업내용)**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 R&D
- **(기간/지원규모)** 12개월(단년) 또는 20개월(다년) / 4억원내외(연 2억원내외)

※ 기술혁신개발 R&D, 지역특화 R&D 분야는 현재 개정이 추진 중으로 기존 인센티브가 확대 되거나 혹은 축소될 수 있음

[6] (R&D기획 지원) 참여기업의 R&D 수행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하고,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제시

- 중기부 및 과기부 등 부처 R&D 과제 신청 예정 기업 대상 선행기술 조사, 기술로드맵 R&D과제 기획 컨설팅 제공
- 바우처 방식의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별 최적의 컨설팅 제공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참여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 아기유니콘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신규(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 아기유니콘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되어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 노동부, 민간위탁운영기관 등과 협업하여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사업주에게 지급, 1인당 최대 96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지원규모)**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 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8] (방송광고 지원) 대외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진출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대상 지상파TV, 라디오의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참여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여부는 현재 협의중**)

* (추진체계)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은 kobaco-KISED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기업 포함 → 송출비 70% 할인(할인시간대) 등

**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4,500만원)

<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벤처기업 등에게 KBS, MBC, IPTV, 라디오 등의 광고비 할인 지원
- **(기간/지원규모)** 선정 후 3년 / 246개사, 1230억원 지원 ('21)

[9] (ESG 경영 도입 지원) 참여기업의 ESG 준비상황을 점검,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해 ESG 요소를 경영활동에 내재화 지원

- 희망기업 대상 ESG 자가진단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자가진단 무상 지원 및 자사 ESG 수준 및 개선과제 등 진단결과 자동 발급

< ESG 경영 자가진단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ESG 자가진단 플랫폼(K-doctor)을 링크, 중소기업의 ESG 자가진단
- **(세부내용)** 환경(10개), 사회(7개), 지배구조(3개), 정책(3개) 문항으로 구성

[10] (글로벌 인재채용) 해외 고급 기술 인력 채용을 통한 상대국 진출

- 아기유니콘 기업의 국내 거주 해외인력 채용 ⇨ 해당인력의 모국가 진출 전략 수립 및 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①글로벌인재 발굴 → ②매칭서비스 → ③비자발급지원 → ③ 해당국가 진출

- **(매칭 연계)** 국내 유학중인 글로벌 인재들의 아기유니콘 채용 박람회 개최 등 글로벌 인재 매칭 지원

* **글로벌 인재 채용 박람회** :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과 협업해 아기유니콘 기업들과 글로벌 우수인력 현장 면접 및 매칭행사 지원

[11] (글로벌 시장진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아기유니콘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PR/광고 및 플랫폼 연계 지원

- 동남아 현지 인플루언서, 언론 매체 연계 지원, 해외 언어별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및 **현지 유력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활동*** 지원

**** (홍보지원)** 해외 스타트업 전문 언론사 및 해외 인플루언서 등 활용 홍보진행, **(영상제작)** 영문보도자료 감수, **소셜미디어용 홍보물 제작지원**

- 수출바우처사업*을 통해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컨설팅, 통번역, 홍보/광고 등 13개 분야) →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선정지원)** 아기유니콘 선정 전 기업대상 수출바우처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12] (디지털 연계) 클라우드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국내 유명 플랫폼과 연계해 SaaS 등 폭넓은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진출 아기유니콘의 경영 지원 확장성과 경제성을 제공해 **개방형 글로벌 생태계 참여 지원**
- 네트워킹, 빅데이터 분석, 보안, AI 등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제공(기업당 최대 2천만원)**

* 플랫폼 상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 제공을 통한 경영지원

[13] (상생/연계 강화) 선정 기업들의 동반성장 및 위상강화 지원

-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이 예비유니콘 신청(Track2) 시 **가점(1차평가 단계)**을 부여하여 **유니콘 프로젝트 간 연계성 강화 검토**
- 벤처창업유공 **포상 시 가점(+2)**을 부여해 상생지향형 예비유니콘 달성 기업이 정부표창을 수상토록 해 **사기 진작 및 PR 강화**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아기유니콘 및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본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창업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협약 후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됩니다.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의 요건검토 및 매 평가과정을 비롯하여 협약체결 전후에도 요건부적합이 확인될 시 요건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창업사업화를 목적으로하는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타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합니다.
 - * (창업지원사업)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 "사업화"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목록)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혁신분야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창업 중심대학지원사업, 공공기술창업사업화지원사업, 생애최초청년창업지원사업,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 헬스케어빅데이터플랫폼기반시스타트업육성 등
 - **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 예시 : 타 사업의 협약체결을 '23.5월(또는 이전)에 진행한 경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의 요건 탈락대상이며, 기 체결한 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내(~'23.6.30) 타 수행사업의 협약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예시 :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22) 협약 종료 예정일이 '23.6.30(또는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

7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창업진흥원	02-2039-1076 (1394, 1320)
K-Startup 시스템 이용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참고1

(아기유니콘200) 창업여부 기준표

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정 전	개정 후 ('22.6.29.)
<p>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 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 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p>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 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p>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자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⑫ **기술보증기금**
 -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⑭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참고3**(아기유니콘200)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시장개척에 필요한 직접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목	내용
광고선전비	브랜드 개발 비용, 디자인 개발, 타깃 시장 홍보물(영상, 광고, 일간지 등)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게재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인건비	마케팅, 시장조사 등을 위해 기업 소속직원 및 단기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개선 필요 시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시장개척을 위한 거래 수행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계장치비	창업기업 보유 제품(서비스) 제작 관련 기자재 비용 ※ 현물 계상만 가능
재료비	창업기업 보유 시약 등 재료비 ※ 현물 계상만 가능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비용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최종 선정기업 기준)

*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Track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 (Track 1 : 일반)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¹⁾ 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²⁾ 유치기업
② 성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19.12.31 이전 설립) * 전년도말('22.12.31) 상시종업원³⁾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2년도 매출액⁴⁾이 '19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ii)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20.1.1 이후 설립) * 전년도말('22.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2년도 매출액⁴⁾이 '21년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③ 혁신성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 ⁵⁾ 이상인 기업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⁵⁾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과거 3년간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 중 접수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⁶⁾이 25억 원이 된 투자건을 기준으로 판단
-----------	---

3 지역스타기업⁷⁾으로 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시장검증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¹⁾ 에서 30억 원 이상(누적) 투자 ²⁾ 유치기업
② 성장성	○ ① 의 성장성과 요건 동일
③ 혁신성	○ ① 의 혁신성과 요건 동일

-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 2) 투자인정 범위
 - 신청접수 기간내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 (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3) 상시종업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인정
- 4) 매출액은 감사보고서상의 매출액을 우선 적용(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 5) ① 시장검증, 성장성 요건, ② 기업가치 요건, ③ 시장검증, 성장성 요건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를 실시하여 혁신성 충족 여부를 판단(요건①,③ BB등급 이상, 요건② B등급 이상)
- 6)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7) 지역스타기업육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선정된 기업

○ **(Track 2 : 글로벌) 일반 Track 요건 충족기업 중 해외진출 추진기업**

< 해외 진출 추진기업 유형 >

- **(글로벌 초기기업)**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 **(글로벌 확인기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BM) 또는 제품에 대한 해외 검증(FDA, MDA, INMETRO, TSE, CCC, CES 승인 등)을 받은 기업
- **(글로벌 창업기업)** 국내 시장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창업한 기업(Born Global)
- **(글로벌 진출기업)** 내수시장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외시장에 진출(서비스 런칭, 제품 출시 등)한 기업

*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유형을 '[별첨7] 글로벌지향성 체크리스트'에 직접 작성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기업,제한기업)[참고2]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 [참고3] 해당 시
-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4] 해당 시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2

보증지원 내용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 원 이내

자금 용도별 보증 우대내용	
운전자금	운전자금 보증금액 30억 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R&D자금	최대 20억 원 한도 (R&D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작비, 인건비 등)
시장개척자금	최대 10억 원 한도 (글로벌 진출자금에 한함)

- *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200억원에서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유동화 회사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 및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임
- * 신보(보증재단 포함) 거래기업은 전액상환 하거나 기술보증기금으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특별보증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 *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보증조건 등

구 분	주요 내용
보증비율	85% (협약은행* 이용시 100% 보증)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료	1% 고정보증료율 * 사회환원·공헌활동,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시 최대 0.2%p 추가 감면
지원방식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총 200억 이내의 한도 를 부여하고 최대 100억원까지는 선정연도(2023년)에 우선 지원 하고 잔여한도는 차년도(2024년)에 지원
상환의무 부여	보증지원 이후 당초 보증금액 이상의 누적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보증금액 중 일부 상환의무(Track 1 : 20%, Track 2 : 10%) 부여
옵션부여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 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으로 취급(옵션비율 : 보증금액 10%, 최대 5억원)

3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일 정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23.3.6(월)
↓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k-unicorn.or.kr) * 국민추천[3.6(월)~4.12(수)] [참고5] 참조	4.3(월) ~ 4.12(수)
↓		
① 1차 평가 (요건검토·서면평가)	▶ 2차 평가 대상기업(50개사 이내) 선정 * (1단계)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2단계) 서면평가	~ 4월말
↓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보증심사위원회)	▶ (1단계)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사업장 현장실사 및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2단계)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평가 대상기업 (20개사 내외) 선정 *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기간, 기술평가등급, 매출 증가율 등 지표 활용	4월말 ~ 6월초
↓		
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심의위원회)	▶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공개 발표 및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최종선정심의위원회에는 국민심사단 참여 가능	6월 중순
↓		
최종선정	▶ 최종 선정기업(15개사 내외) 발표	6월말
↓		
보증지원	▶ 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	7월 ~

□ 단계별 평가 기준

① 일반 예비유니콘(Track 1)

○ 1차 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대상 요건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투자유치금액	30	3. 매출규모	20
2. 기업가치	30	4. 고용인원	20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투자유치금액, ② 기업가치, ③ 매출규모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기업(2점)			

- 2차 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보증심사위원회)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혁신성)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보증심사위원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1. 투자유치기간	15	최종 투자건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일로부터 접수일까지 기간(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함)
2. 기술사업평가등급	30	기술평가 결과 반영
3. 매출액증가율	15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 매출 증가율
4. 고용증가율	10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 고용증가율
5.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	30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지원 적합성 여부를 기술보증기금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총 점	100	
* 감점 : [별첨 4]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 최종평가(국민·전문가평가) 기준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1. 유니콘기업 가능성	60	아이템.사업 모델 혁신성 (10)	기존 기술.사업모델 대비 독창성과 차별성(경쟁우위) 기술.사업모델 자체의 난이도(진입장벽) 핵심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새로운 시장개척기술 등
		성장성 (10)	최근 매출 성장세의 양적.질적 건전성 주력시장의 규모, 주력시장 성장성, 시장점유율 해외시장 진출 현황(가능성 포함) 등
		고성장 지속가능성 및 경쟁 강도(10)	시장 선도.지배적 위치 확보(가능성) 여·부 대기업 등 경쟁기업 출현 가능성(진입장벽 정도) 등 브랜드 또는 제품의 시장 내 인지도 등
		수익창출 가능성 (10)	사업모델 및 전략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및 확장성 매출 및 비용계획의 적정성 등
		후속투자유치 가능성 (20)	시장.고객 점유율 증가 현황 및 향후 전망 투자유치실적, Valuation 및 투자 배수 실적 현재 VC와 협상 진행 여·부 및 내용 IPO 가능성 및 시기 등
2.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	20	특별보증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20)	<p>※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취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p> 적자여·부 등 현행 재무상태 및 그간 투자유치실적 특별보증 이외 자금조달 대안 및 가능성 대규모 민간자금유치 이전까지 선제적 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 특별보증 지원 시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기업가치 제고 정도 등 대내외 규제 등 리스크 요인 및 발생경과, 대응전략 등
3. 자금지원 효과성	10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10)	필요자금 대비 지원금액 규모의 적정성 추가 필요자금 확보방안 자금 활용용도(개발,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적정성 향후 투입자금 회수방안의 적정성 등
4. 성과공유 가능성	10	사회 환원.공헌 가능성 (10)	수익환원(Startup 투자, 보육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재능기부(후배기업 멘토링(BM수립 등), 기술/디자인 전문 교육 등 후배 양성)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경영 등 실적 및 실행 가능성
총 점			100

② 글로벌 예비유니콘(Track 2)

○ 1차 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기업에 대해 지원대상 요건 검토
- (2단계: 서면평가)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 점	평가지표	배 점
1. 글로벌 지향성	20	4. 매출규모	20
2. 투자유치금액	25	5. 고용인원	10
3. 기업가치	25		
총 점	100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글로벌 지향성, ② 투자유치금액, ③ 기업가치, ④ 매출규모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 아기유니콘 기업(3점),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2점)			

○ 2차 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보증심사위원회)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혁신성)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보증심사위원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1. 글로벌 진출 가능성	20	글로벌 인프라* 및 성장 가능성**을 정성평가 * 해외법인 설립, 현지 유통망 확보 여부, 경영진 글로벌 역량 등 ** 글로벌 매출 확대 가능성, 제품·서비스의 해외수출 성공 가능성 등
2. 투자유치기간	15	최종 투자건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일로부터 접수일까지 기간(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함)
3. 기술사업평가등급	20	기술평가 결과 반영
4. 매출액증가율	10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 매출 증가율
5. 고용증가율	5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사업공고 직전년도까지 3개년 고용증가율
6.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	30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지원 적합성 여부를 기술보증기금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총 점	100	
* 감점 : [별첨 4]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 최종평가 (국민·전문가평가) 기준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지표	
1. 글로벌 성공가능성	20	해외진출 요건(5)	글로벌 초기기업, 글로벌 확인기업, 글로벌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해당여부
		해외매출 발생가능성(5)	전년도 해외 매출 실적 및 최근 해외 매출 시현 실적 및 발생가능성 등
		해외 인프라 확보(5)	해외 검증·인증(CES, FDA 등) 승인 실적, 해외기업과의 업무 협약 체결, 해외법인 및 영업소 설치 등 인프라 확보 노력
		글로벌 인력 확보(5)	경영진 및 인력의 글로벌 역량, 해외업무 전담인력 보유 여부 등
2. 글로벌 유니콘기업 가능성	50	아이템·사업 모델 혁신성 (10)	기존 기술·사업모델 대비 독창성과 차별성(경쟁우위)
			기술·사업모델 자체의 난이도(진입장벽)
		성장성 (10)	핵심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새로운 시장개척기술 등
			최근 매출 성장세의 양적·질적 건전성
		고성장 지속가능성 및 경쟁 강도(10)	주력시장의 규모, 주력시장 성장성, 시장점유율
			해외시장 진출현황(가능성 포함) 등
수익창출 가능성 (10)	시장 선도·지배적 위치 확보(가능성) 여부,		
	대기업 등 경쟁기업 출현 가능성(진입장벽 정도) 등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 (10)	브랜드 또는 제품의 시장 내 인지도 등		
	사업모델 및 전략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 특별보증 지원 타당성	20	특별보증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20)	수익모델의 적정성 및 확장성
			매출 및 비용계획의 적정성 등
4. 자금지원 효과성	5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5)	시장·고객 점유율 증가 현황 및 향후 전망
			투자유치실적, Valuation 및 투자 배수 실적
5. 성과공유 가능성	5	사회 환원·공헌가능성 (5)	현재 VC와 협상진행 여부 및 내용
			IPO 가능성 및 시기 등
총 점			100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4월 12일(수) 15시까지

□ 신청방법

- K-유니콘(www.k-unicorn.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① 'www.k-unicorn.or.kr' 사이트 접속 → ②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 ③ '로그인' → ④ '창업·투자' → ⑤ '투자연계보증' → ⑥ '예비유니콘특별보증/신청하기' → ⑦ '양식 다운로드', '신청하기' → ⑧ 기본정보 입력 → ⑨ 기술사업계획서·투자유치내역서 등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⑩ 제출('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1]' 참고
-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
-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
- * 마감일에는 접속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 신청·접수 후 반드시 **접수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것(접수증 출력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①	기술사업계획서 [별첨2]
②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별첨3]
③	평판 리스크 관련 협약서 [별첨4]
④	투자유치 내역서 [별첨5]
⑤	투자유치 계약서(사본) : 투자유치 내역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제출
⑥	기준년도('19.12.31)* 및 전년도말('22.12.31)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 '20.1.1 이후 설립법인의 경우 '20년말 명부 제출
⑦	사전동의서 [별첨6]
⑧	주주명부
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舊: 법인등기부등본)
⑩	감사보고서(2019~2022년)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⑪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지역스타기업에 한함)
⑫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글로벌 Track 신청기업에 한함) [별첨7]
기 타	○ 최종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추후 안내)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5 연계지원사업 안내

- ① **(M&A 지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한도(최대200억원) 이내에서 기술 혁신 M&A 자금* 및 소요자금** 추가 지원
* 구조조정 유형(기업인수, 기업합병)에 따른 별도 가치평가를 통해 소요자금 산정
** 기업인수에 소요되는 인수자금 및 부대비용
- ② **(해외진출 지원)** 민간은행이 보유중인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유니콘 선정 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신한B) 아시아 진출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기업B) 해외진출BOX
- ③ **(정책금융 연계)** 정책금융기관이 연계하여 투자·융자 후속지원
 - (대출)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에 대해 연계 대출(無보증부) 지원
 - (투자) 예비유니콘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자본확충 등 지원
- ④ **(글로벌 IR 지원)**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IR 육성사업」을 통해 야기유니콘에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에 해외투자 유치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글로벌 IR 지원(미국, 싱가포르)

6 의무 이행사항

- (자료제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각 단계별 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성과관리)**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등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1단계] 아기유니콘 및 [2단계] 예비유니콘 기업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동시 신청한 경우 1단계, 2단계 모두 신청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 이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 평판리스크 협약서[별첨4]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2·3차 평가에 반영되오니, 서류작성, 제출 및 발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최종선정 후 3개월이내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보증승인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71(또는 7655, 7694)

- 참 고
1. 벤처투자기관
 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4.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5.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추천제 안내

- 별 첨
1. (예비유니콘)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2. (예비유니콘) 기술사업계획서
 3. (예비유니콘)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4. (예비유니콘) 평판 리스크 관련 협약서
 5. (예비유니콘) 투자유치내역서
 6. (예비유니콘) 사전동의서
 7. (예비유니콘) 글로벌 지향수준 체크리스트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⑧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개인투자자(온라인 소액투자자 포함) 투자실적 제외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 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참고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新	舊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46463, 47640	46463, 47640
	· 도박기계 임대업	69390	69390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75999	75999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9111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91249
사치 향락 관련	· 주류 중개업	46102	46102
	· 귀금속 중개업	46109	46109
	· 주류 도소매업	46331, 47221	46331, 47221
	· 귀금속 도소매업	46492, 47830	46492, 47830
	· 주점업	5621	5621
	·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91223
	· 무도장 운영업	91291	91291
	· 마사지업	96122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6811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681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1, 68222	68221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142	59142
	· 전화방	91229	91229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1	91241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96992	96992

참고4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분	세부항목
결격 요건 (1개라도 "부"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최대주주인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동일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한 것을 심사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 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참고5

국민추천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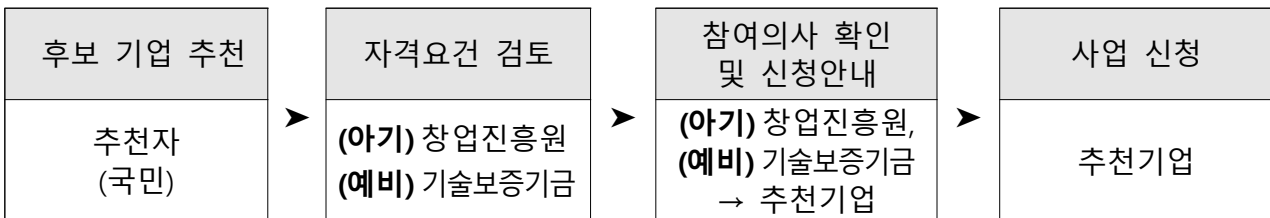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사업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합니다.

□ 추천대상

구분	지원대상 요건
아기유니콘200	①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 기업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2020.1월 이후 설립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② 기업가치 산정기준(공고문 참조)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③ 지역스타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3개년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 (2020.1월 이후 설립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 추천방법

<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추천제 운영절차 >



- (추천방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정책 > 국민추천 - 사업목록 중 ‘아기유니콘’ 또는 ‘예비유니콘’ 선택 후 국민추천서 작성
- (추천기간) 2023년 3월 6일(월) ~ 4월 12일(수) 15시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경품지급) 추천해 주신 기업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 제공 예정(5월 초) * 추천기업이 신청자격(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처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진흥원	02-3440-7303, 7309, 7314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71, 7694